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낙동강 친수공간 조성 등 '12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시책 사업 추진인력 및「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1.9.30.)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과

○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개편을 위한 '12년도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564명 → **1,586명(+22명)**

나.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

- ㅇ 일반직 : 1,250명 → 1,292명(+42명)
  - • 6급이하 : 1,162명 → 1,204명(+42명)
- ㅇ 연구직 : 2명 → 3명(+1명)
- ㅇ 별정직 : 13명(변동없음)
- ㅇ 기능직 : 265명 → 244명(△21명)

다.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현 행	79%이상	19%이내	2%이내
개 정	82%이상	17%이내	1%이내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ㅇ 「지방자치법」 제112조
-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
-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6의2호
- ㅇ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
- ㅇ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처리지침(행안부예규 제371호)

나.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867,097천원 정도**

- 일반직 정원증원 : 60,469천원 × 13명 = 786,097천원
  ※ 인건비 기준 : 행정안전부 2012년 공무원 1인당 총액인건비 기준
- 사회복지직 증원 (9명) : 81,000천원
  ※ 1인당 인건비 30,000천원기준 70% 국비지원
- 비용추계서 별첨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64명”을 “1,586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1,536명”을 “1,558명”으로 한다.
별표1과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82%이상	17%이내	1%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586	1,586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292	1,292					
3급	1	1					
4급	10	5	1	1	1	2	
5급	77	27	3	4	4	12	27
6급이하계	1,204	1,204					
별정직 계	13	13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3	13					
연구직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기능직 계	244	24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2조 (정원의 총수) 구미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56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536명
2. (생략)

[별표1]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79%이상	19%이내	2%이내

[별표3]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564	1,564					
⋮								
일반직	소 계	1,250	1,250					
	⋮							
	6급이하	1,162	1,162					
⋮								
연구직	소 계	2	2					
	⋮							
	연구사	2	2					
⋮								
기능직계		265	265					

개 정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 1,586명----------.

1. ---------- : 1,558명
2. (현행과 같음)

[별표1]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82%이상	17%이내	1%이내

[별표3]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586	1,586					
⋮								
일반직	소 계	1,292	1,292					
	⋮							
	6급이하	1,204	1,204					
⋮								
연구직	소 계	3	3					
	⋮							
	연구사	3	3					
⋮								
기능직계		244	244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1.8.22>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안부예규 제371호)

Ⅱ.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의 전환절차 및 방법 등

가. 전환기준

1)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규모는 2011년 9월 25일 현재 각 자치단체의 기구·정원 등에 관한 조례·규칙에 규정된 정원을 기준으로 함(조례·규칙에 규정된 정원 외에 별도정원 등의 수는 비포함)

2)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재 계급을 고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자치단체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별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시 총액인건비 내에서 전환 계급별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구미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1,58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안제2조)

나. 낙동강살리기 사업종료후 시설 유지관리, 외국인·다문화가정 복지지원 등 '12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시책 사업추진 인력 및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1.9.30.)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 확대 및 강화를 위해 공무원 정원 22명을 증원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산정·통보되는 총액인건비 1인당 인건비기준으로 추계하기로 하며, 인건비는 직접경비 및 이전경비를 모두 포함한다.

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추계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정원 22명을 증원할 경우 2012년 1,056,097천원을 포함하여 2016년까지 5,606,956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1]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액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계	1,056,097	1,087,779	1,120,412	1,154,024	1,188,644	5,606,956
일반직증원(13명)	786,097	809,679	833,969	858,988	884,757	4,173,490
사회복지직증원(9명)	270,000	278,100	286,443	295,036	303,887	1,433,466

* 공무원 총보수 인상률 3%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189,000	194,670	200,510	206,525	212,720	1,003,425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867,097	893,109	919,902	947,499	975,924	4,603,531
민간							
기타							
합계		1,056,097	1,087,779	1,120,412	1,154,024	1,188,644	5,606,956

5. 부대의견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총무과 이은희
연락처	054-480-677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본 개정안은 '12년 총액인건비상 증원가능 인력 13명과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1.9.30.)에 따른 사회복지직 순증인력 9명을 포함해 총 정원 22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직 13명에 대한 1인당 인건비 기준은 '12년 총액인건비상 기준인력 1인당 인건비인 60,469천원, 사회복지직 9명에 대한 1인당 인건비는 30,000천원으로 하고 매년 공무원 총보수 인상률 3%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사회복지직 인건비의 경우 30,000천원 기준 70% 국비가 지원된다.

가. 일반직 13명 증원 : 60,469천원 × 13명 = 786,097천원

※ 인건비 기준 : 행정안전부 2012년 공무원 1인당 총액인건비 기준

나. 사회복지직 9명 증원 : 30,000천원 × 9명 = 270,000천원

※ 1인당 인건비 30,000천원기준 70% 국비지원